

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I. 설치기준

1. 시설기준

- 가. 중앙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, 회의실, 교육·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나.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.

2. 직제기준

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장, 부센터장을 두고 연구, 교육·홍보,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3. 인력기준

가. 배치기준

- 1) 중앙치매센터장: 1명을 둔다. 다만,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주 2일(16시간)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- 2) 부센터장: 상근으로 1명을 둔다.
- 3) 팀장 및 팀원: 각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 1명을 둘 수 있다. 팀원은 15명 내외로 둘 수 있다.

나. 자격기준

- 1) 중앙치매센터장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 - 가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
 - 나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 - 다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 - 라)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- 마) 가)부터 라)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
- 2) 부센터장: 1)가)부터 마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[1)가)부터 마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]이 있는 사람
- 3) 팀장: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(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사람

II. 운영기준

1. 중앙치매센터장은 광역치매센터 업무의 총괄·조정 및 기술 제공,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,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역치매센터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중앙치매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, 예산·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3. 중앙치매센터장은 조직, 인사, 급여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,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 - 1) 중앙치매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
 - 2) 중앙치매센터장, 부센터장, 팀장 및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
 - 3)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4)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